

1999. 7.

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-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-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

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 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	'99. 7. 15	'99. 7. 15	'99. 7. 20	'99. 7. 20	산림 녹지과
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 안	"	"	"	"	교통과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되고('99. 4. 9.)
- 건설교통부로부터 “도시공원·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작성지침”이 시달('99. 5. 21.)되어 종전의 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”를 우리시의 공원·녹지의 효율적 관리등을 위하여 전문개정코져 함.

2) 주요골자

-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여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
-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
 - 창고시설, 식물관련시설 및 관리용 가설건축물등 가설건축물의 대상을 확대
 -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을 기존 연면적 범위안에서 허용(당초 개축·재축 및 대수선만 허용하고 증축은 종교용시설 및 보육시설에 한하여 허용함)
 - 가설건축물 축조는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시공할 것을 명시함.

나.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의무, 관리규정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,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운영 및 주차수요관리 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임.

2) 주요골자

- 민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및 관리규정신고의무규정등 폐지
-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체계 개선
 - (30분당 요금→30분까지 기본요금, 30분이후 10분단위 징수체계로 개선)
 - 1급지 : 30분까지 500원, 30분이후 10분단위 200원
 - 2급지 : 30분까지 300원, 30분이후 10분단위 150원

- 주차장 밀집시간대 주차시 가산금합산부과 규정 폐지
- 경자동차(800cc미만)에 대해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마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- 본 조례는 1995. 1. 14일 조례 제88호로 제정 공포되어 2회 걸쳐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던 중
- 건설교통부로부터 1999. 5. 21일부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조례 개정 작성 지침이 시달됨으로
- 도시공원 및 녹지의 각종 제한의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,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나.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- 본 조례는 1995. 1. 14일 조례 제66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5회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던중
- 주차장법이 1998. 2.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됨에 따라
-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및 관리규정 신고의무 등이 폐지 됨으로 관련규정과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· 답변 요지

가.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[질 의]

○ 현재 공원지역에 적용되는 것인지?

☞ 답 변 : 도시공원법에 관리하는 공원 지역이 대상임.

[질 의]

○ 공원으로 수십년 묶여 있던 공원이 완화되는 것인지?

☞ 답 변 : 증·개축 및 대수선 등을 할 수 있어 완화하는 것임.

[질 의]

○ 개정전과 개정후 달라지는 것은?

☞ 답 변 : 가설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 증·개축등이 가능함.

[질 의]

○ 제3조(공원점용허가)제3항 6호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와 아니할 것과의 차이는?

☞ 답 변 : 같은뜻이지만 아니할 것은 강한 뜻이 내포되어 있어 안쓰고 있음.